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수신자 기관(병원)장

(경유) 사회사업실(과)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 목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개최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본 협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나. 주 제 : 중독문제와 접근

다. 일 시 : 2019년 9월 28일(토) 09:00 ~ 18:00 (08:30부터 접수)

다. 장 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

라. 대 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마. 인 원 : 120명

바. 이수시간 : 8시간

사.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0:00부터 ~ 9월 20일(금) 24:00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

아. 접수방법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붙임 참조)

자. 교 육 비 : 56,000원 (식사비 미포함 금액 / 온라인 신청 후 이니시스 결제 진행)

※ 교육비 영수증은 신청자 개인메일로 자동발행

차. 유의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등) 확인

카. 문 의 : 협회 사무국 박지혜 과장 (02-702-5638, kamhsw@hanmail.net)

#. 붙임 :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안내문 1부.
끝.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담당 박지혜

협회장 이미경

협조자 교육연구위원장 박현숙

시행 한정사협(자) 19-092 (2019.08.16.) 접수

우 04356 경기도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13, 319호

/http://www.kamhsw.or.kr

전화 02-702-5638

전송 02-701-5632

/kamhsw@hanmail.net

/공개

[붙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서울)** 안내

I. 사업개요

1. 행 사 명 :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2. 주 제 : 사법체계안에서의 중독문제와 접근
3. 내 용
 - 가. 중독관련 보호관찰프로그램 동향을 알아본다.
 - 나. 외국의 중독관련 사법체계 동향을 통해 중독문제를 접근한다.
 - 다. 한국의 사법체계안에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4. 일 시 : 2019년 9월 28일(토) 09:00 ~ 18:00 (08:30부터 접수)
5. 장 소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
6. 대 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7. 인 원 : 120명
8. 이수시간 : **8시간**
 - ※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총 8시간)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수 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히 지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9. 교 육 비 : 56,000원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 비회원 동일)
 - ※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
 - ※ 교육비 납부 방법 :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보수교육 신청 후 KG이니시스 결제진행 (**결제방법 : 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 **교육비 영수증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mail로 자동 발행**
10.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0:00부터 ~ 9월 20일(금) 24:00까지
 -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완료
11. 유의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등) 확인**

II. 교육안내

1.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08:30 ~ 09:00	오전 교육 등록 확인
09:00 ~ 11:00	중독 관련 보호관찰 프로그램 동향 및 운영안내 윤용장(법무부 치료처우과 과장)
11:00 ~ 13:00	외국의 중독 관련 사법체계의 동향 및 이해 김민(대구대학교 겸임교수)
13:00 ~ 14:00	점심시간 및 오후 교육 등록 확인
14:00 ~ 16:00	성폭·가폭 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적용 프로그램 채선영(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장)
16:00 ~ 18:00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치료처분 프로그램 이계성(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II. 등록안내

1. 등록

-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00:00부터 ~ 9월 20일(금) 24: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당일 현장접수 없음**)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로그인
 -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으로 이동
 - 2019년 9월 28일(토)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교육 안내 클릭
 -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후 교육비 결제 진행 (결제방법 : 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교육비 : 56,000원
 - ※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
 - ※ **교육비 영수증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mail로 자동 발행**
- 유의사항
 - 교육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
 - 교육 관련 메일링 또는 SMS의 원활한 발송과 교육이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개인 정보(소속 / 연락처 / 이메일)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요망

2. 취소

- 취소신청 방법

- (1)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로그인
- (2)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으로 이동
- (3) 2019년 9월 28일(토) ‘2019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교육 클릭
- (4) 하단의 ‘취소’ 버튼 클릭 후 환불처리 진행

2) 교육비 환불기준(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 환불 규정 기준)

교육	교육취소(환불신청)시점	제15차 법정보수교육 기준	환불금액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9 28일(토)	해당 교육일로부터 5일전까지	~ 9월 23일(월) 까지	100% 전액 환불
	교육일 4일전부터 교육일 2일전까지	9월 24일(화) ~ 9월 26일(목)	50% 환불
	교육일 전일부터 교육당일까지	9월 27일(금) ~ 9월 28일(토)	환불불가

IV. 법정 보수교육 안내

1. 법정보수교육 대상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수교육)제1항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공통과정 4시간 이상 + 개별과정 8시간 이상)

2.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수교육)제2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면제자

면제 대상자	증명서류
신규자격증 취득자	자격증사본
간호, 심리, 사회복지, 보건전공 관련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군복무자	병적증명서
육아휴직자(6개월 이상)	육아휴직 관련 기관 내부 공식 기안
간호학, 사회복지학, 임상심리학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재직증명서

■ 유예자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6개월 이상)	진단서(기간표시)

※ 법정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신 청 자	해당연도 법정보수교육에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연도의 법정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신청
제출서류	법정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관련증명서류
신청방법	관련증명서류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

3. 미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한 소급 적용

■ 면제·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6개월 미만일 경우	복귀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자의 해당 연도 교육 시간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4시간 이상
유예 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8시간 이상 (공통 4시간 이상, 개별 8시간 이상)
유예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12시간 이상 (공통 4시간 이상, 개별 8시간 이상)

4. 이수확인증 신청 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수교육 이수내역 - 해당교육 이수증 출력
-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발급 신청 메일 발송(교육일 기준 2주 후 발급하여 회신)

1. 성함 / 2. 생년월일 / 3. 소속기관 / 4. 자격급수 / 5. 참석한 법정보수교육 차수와 개최 날짜

V. 연회비 안내

1. 연 회 비 : 연 50,000원
2.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 ①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기간이 과거 누적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개정 2018.04.13.>
-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
 1.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04.13.>
 2.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회원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회복을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8.04.13.>
- ③ 회원의 탈퇴 및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4.13.>

Ⅶ. 협회원 가입 안내

1. 가 입 비 : 20,000원 (최초 1회 납부)
2. 연 회 비 : 연 50,000원
3.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4. 구비서류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 및 기타자료' 게시판 참고)
 - 1) 가입원서 1부
 - 2) 사진 2매
 -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4)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증명서 각 1부 (송금증 및 이체확인증)
 -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 제공 동의서
5. 제출처 : (04356) 경기도 용산구 한강대로 43길 13, 319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 협회원 가입 여부는 본 협회 홈페이지(<http://www.kamhsw.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회원구분 에서 확인 가능하며, 비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구분에 '손님, 일반, 조정'으로 표기됨.

VIII. 오시/는 길

- ▶ 주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 ▶ 교통편

<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

- 네비게이션에 ‘국립정신건강센터’ 검색

< 버스를 이용할 경우 >

- 320, 2012, 2227, 마을버스 3번 대원교교 앞 하차

<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 7호선 중곡역 하차 1번 출구, 우측방향으로 100m

- ▶ 주차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이용 : 최초 30분 무료, 10분당 300원, 1일 최대 20,000원까지 부과

※ 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